

『위험물운송자』 강습(자격취득) 교육 안내

(Ver 22.5)



구 분	주 요 내 용										
근거법령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근거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78조(안전교육)										
교육 대상	신청자격 ○ 위험물 운송 업무에 종사하기 위하여 위험물운송자 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사람 (결격 해당자 제외)										
	결격사유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1. 만 15세 미만인 사람 2. 정신질환자, 시각 및 청각장애인(단, 해당분야 전문의가 정상적인 안전관리업무 수행이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는 제외) 3. 팔, 다리가 없거나 쓸수 없는 사람 4. 기타 지부장이 부적격하다고 판단한 사람 5. 교육수료 취소 또는 자격이 취소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상호간의 정상적인 언어소통이 불가능한 경우 7. 위험물운송자 강습교육 수료자 ※ 근거 : 안전원 「교육업무규정」 제21조제1항 및 제2항										
교육 안내	과정명 ○ 위험물운송자 강습교육										
	강습일정 ○ 안전원사이트 강습일정 참고										
	교육과정 ※ 1일 8시간 교육(09:00 ~ 18:00, 점심시간 제외)										
	<table border="1"> <thead> <tr> <th>교육과정</th> <th>교육형태</th> <th>교육시간</th> <th>교육장소</th> <th>수수료(원)</th> </tr> </thead> <tbody> <tr> <td>집합과정</td> <td>소집교육</td> <td>소집 2일(16시간)</td> <td>안전원 교육장</td> <td>80,000원</td> </tr> </tbody> </table>	교육과정	교육형태	교육시간	교육장소	수수료(원)	집합과정	소집교육	소집 2일(16시간)	안전원 교육장	80,000원
	교육과정	교육형태	교육시간	교육장소	수수료(원)						
	집합과정	소집교육	소집 2일(16시간)	안전원 교육장	80,000원						
	학습흐름도 										
수료기준 ○ 소집교육(2일) → 수료(자격 취득) ○ 수료시 「위험물운송자 수첩」이 발급됩니다.											
일정변경 ○ 해당 강습교육 1일차 교육 종료 전까지 신청가능 (단, 해당 연도 강습일정에 한하여 일정변경 가능)											
교육장소 ○ 각 시도지부 지정교육장											
교육 접수	접수방법 ○ 인터넷 접수(선착순 마감)										
	수수료 ○ 교육수수료 : 80,000원 ※계산서는 현금(무통장입금 포함)으로 납부한 경우에 한하여 발급됩니다. (신용카드로 납부하거나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은 경우에는 계산서가 발급되지 않습니다)										
	제출서류 ○ 사진(3.5*4.5cm) 1매, 신분증(교육당일 지참)										

	환불규정	<table border="1"> <tr> <th>환불기준</th> <th>교육수수료 환불기준</th> </tr> <tr> <td>수강자가 1일차 교육종료 전까지 신청한 경우</td> <td>전액</td> </tr> <tr> <td>과오납한 경우</td> <td>과오납 금액</td> </tr> <tr> <td>수강자가 일부 교육을 받은 후 신청하는 경우</td> <td>교육을 받은 일수만큼 교육수수료를 공제한 금액</td> </tr> <tr> <td>결강자가 교육시작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한 경우</td> <td>교육수수료의 20% 공제한 금액</td> </tr> <tr> <td>결강자가 교육시작일로부터 1년이 지난 후 신청한 경우</td> <td>없음</td> </tr> </table>	환불기준	교육수수료 환불기준	수강자가 1일차 교육종료 전까지 신청한 경우	전액	과오납한 경우	과오납 금액	수강자가 일부 교육을 받은 후 신청하는 경우	교육을 받은 일수만큼 교육수수료를 공제한 금액	결강자가 교육시작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한 경우	교육수수료의 20% 공제한 금액	결강자가 교육시작일로부터 1년이 지난 후 신청한 경우	없음																						
		환불기준	교육수수료 환불기준																																	
수강자가 1일차 교육종료 전까지 신청한 경우	전액																																			
과오납한 경우	과오납 금액																																			
수강자가 일부 교육을 받은 후 신청하는 경우	교육을 받은 일수만큼 교육수수료를 공제한 금액																																			
결강자가 교육시작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한 경우	교육수수료의 20% 공제한 금액																																			
결강자가 교육시작일로부터 1년이 지난 후 신청한 경우	없음																																			
<p>[환불 유의사항]</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용카드 결제 후 교육실시 전일까지 환불신청 하지 않은 경우, 별도의 공제 금액이 발생하므로 인터넷으로 환불 신청을 할 수 없으며, 해당 지부로 방문하셔서 환불 신청하셔야 합니다. 무통장으로 입금하신 후 환불 신청할 경우 금융기관 송금수수료를 제한 금액이 환불됩니다. 																																				
교육비 결제방법 안내	<p>» 신용카드 결제</p> <p>주 의 사 항</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용카드 결제 후 교육실시 전일까지 환불신청 하지 않은 경우, 별도의 공제금액이 발생하므로 인터넷으로 환불신청을 할 수 없으며, 해당 지부로 방문하셔서 환불신청 하셔야 합니다. 																																			
	<p>» 무통장 입금</p> <p>주 의 사 항</p>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강습교육 신청 후 익일(근무일 기준) 오후 6시까지 입금이 완료되지 않을 경우 해당 강습교육 신청이 자동취소됩니다. 무통장 계좌는 일회성 계좌이므로 재사용(다시 그 계좌로 입금하는 경우)이 불가능합니다. 재사용으로 인한 금전손실에 대해서는 고객님의 책임이므로 사용에 주의하시기바랍니다. 은행 ATM CD기를 이용한 입금이 불가하므로 반드시 은행 창구나 인터넷 뱅킹, 폰 뱅킹을 사용하여 입금하시기 바랍니다. 과오납이나 분할납이 허용되지 않으므로 정확한 금액을 입금하셔야 합니다. 입금하신 후 정상처리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p>[확인방법 : http://www.kfsi.or.kr 접속 (교육정보 > 강습정보 > 강습신청내역 메뉴)]</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용(체크)카드로 결제 후 환불시 카드사의 정산처리에 따라 취소되는 시점이 2~3주 정도 지연 될 수 있습니다. 																																			
지부별 연락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근무시간 : 09:00 ~ 18:00 지부별 연락처 																																			
	<table border="1"> <thead> <tr> <th>지부(지역)</th> <th>연락처</th> <th>지부(지역)</th> <th>연락처</th> </tr> </thead> <tbody> <tr> <td>서울지부(서울 영등포)</td> <td>02) 850-1378</td> <td>경기지부(수원 팔달구)</td> <td>031) 257-0131</td> </tr> <tr> <td>서울동부지부(서울 동대문구)</td> <td>02) 850-1392</td> <td>경기북부지부(파주)</td> <td>031) 945-3118</td> </tr> <tr> <td>부산지부(부산 금정구)</td> <td>051) 553-8423</td> <td>강원지부(횡성군)</td> <td>033) 345-2119</td> </tr> <tr> <td>대구경북지부(대구 중구)</td> <td>053) 431-2393</td> <td>충북지부(청주 서원구)</td> <td>043) 237-3119</td> </tr> <tr> <td>인천지부(인천 서구)</td> <td>032) 569-1971</td> <td>전북지부(전주 완주군)</td> <td>063) 212-8315</td> </tr> <tr> <td>광주전남지부(광주 광산구)</td> <td>062) 942-6679</td> <td>경남지부(창원 성산구)</td> <td>055) 237-2071</td> </tr> <tr> <td>대전충남지부(대전 대덕구)</td> <td>042) 638-4119</td> <td>제주지부(제주시)</td> <td>064) 758-8047</td> </tr> <tr> <td>울산지부(울산 남구)</td> <td>052) 256-9011</td> <td>-</td> <td>-</td> </tr> </tbody> </table>	지부(지역)	연락처	지부(지역)	연락처	서울지부(서울 영등포)	02) 850-1378	경기지부(수원 팔달구)	031) 257-0131	서울동부지부(서울 동대문구)	02) 850-1392	경기북부지부(파주)	031) 945-3118	부산지부(부산 금정구)	051) 553-8423	강원지부(횡성군)	033) 345-2119	대구경북지부(대구 중구)	053) 431-2393	충북지부(청주 서원구)	043) 237-3119	인천지부(인천 서구)	032) 569-1971	전북지부(전주 완주군)	063) 212-8315	광주전남지부(광주 광산구)	062) 942-6679	경남지부(창원 성산구)	055) 237-2071	대전충남지부(대전 대덕구)	042) 638-4119	제주지부(제주시)	064) 758-8047	울산지부(울산 남구)	052) 256-9011	-
지부(지역)	연락처	지부(지역)	연락처																																	
서울지부(서울 영등포)	02) 850-1378	경기지부(수원 팔달구)	031) 257-0131																																	
서울동부지부(서울 동대문구)	02) 850-1392	경기북부지부(파주)	031) 945-3118																																	
부산지부(부산 금정구)	051) 553-8423	강원지부(횡성군)	033) 345-2119																																	
대구경북지부(대구 중구)	053) 431-2393	충북지부(청주 서원구)	043) 237-3119																																	
인천지부(인천 서구)	032) 569-1971	전북지부(전주 완주군)	063) 212-8315																																	
광주전남지부(광주 광산구)	062) 942-6679	경남지부(창원 성산구)	055) 237-2071																																	
대전충남지부(대전 대덕구)	042) 638-4119	제주지부(제주시)	064) 758-8047																																	
울산지부(울산 남구)	052) 256-9011	-	-																																	

※ 별첨

『위험물운송자』 강습과목 및 시간

강습과목		시간
이 론	소방관계법령	3
	소방학개론	1
	위험물성상	2
	소 계1	6
실 무	이동탱크저장소 구조	1
	이동탱크저장소 운송·운반 기준	1
	소 계2	2
실 습 및 평 가	서식작성 실습·평가 (위험물안전카드, 일반점검표, 비상연락망 구축)	3
	이동탱크저장소 시설점검 실습·평가	2
	비상대응 실습·평가	1
	응급처치 이론·실습·평가	2
	소 계3	8
총 계		16

비고. 교육종료 전 교육만족도 조사 실시